



2022년 6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2022년 4월 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지역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2년 7월

경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준식

목 차

I. 주요 현황 -----	1
1. 주요기관 의결사항 -----	1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	3
3. 정관변경 사항 -----	4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	8
1. 교육지원사업 -----	8
2. 경제(유통)사업 -----	9
3. 신용(금융)사업 -----	10
III. 주요사업 추진 실적 -----	11
IV. 재무 현황 -----	12
1. 재무상태표 -----	12
2. 손익계산서 -----	13

I.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4월 7일	98명	◎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임원선출 규약 제정의 건 ◎ 제3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의 건
6월 29일	148명	◎ 제1호 의안: 조합원이 아닌 이사(사외이사) 선출의 건 ◎ 제2호 의안: 조합원인 이사(여성이사, 경주지역이사, 천북지역이사) 선출의 건

나. 이사회

개최일자	참석인원	주요의결사항
4월 26일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의안: 조합원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의 건 ◎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 지분환급의 건 ◎ 제3호 의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5월 25일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의안: 조합원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의 건 ◎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 지분환급의 건 ◎ 제3호 의안: 충효지점 이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고정자산 취득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제규정 개정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직무범위(조합장, 상임이사) 규정 개정의 건 나. 우선출자 규정 일부 개정의 건
6월 8일 6월 9일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의안: 조합원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의 건 ◎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 지분환급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비상임이사, 여성이사, 사외이사) 선거일 지정의 건 ◎ 제4호 의안: 대의원 선거일 지정의 건 ◎ 제5호 의안: 간부직원 임직의 건 ◎ 제6호 의안: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율 결정의 건 ◎ 제7호 의안: (전)천북농협 조합장 퇴임공로금 지급의 건 ◎ 제8호 의안: 고정자산 취득 승인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본점	경주시 태종로 717	054-748-9501	
(하나로마트)	상 동	054-777-8280	
(주유소)	경주시 태종로 707	054-748-9503	
동부지점	경주시 동성로 144-1	054-748-5708	
성건지점	경주시 금성로 405	054-745-6844	
황성지점	경주시 황성로 16	054-771-8046	
성동지점	경주시 원화로 314	054-748-9507	
충효지점	경주시 충효녹지길 40	054-776-8770	
신도시지점	경주시 용항로 78	054-745-7544	
로컬푸드직매장 용항점	경주시 광종길 21(황성동)	054-746-9002	
천북지점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350	054-774-0506	
로컬푸드직매장 모아점<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586-5	054-775-2566	

나. 인원 현황

○ 임직원 현황

구 분		2022년 6월 말 (A)	2021년 말 (B)	증 감 (C=A-B)
임 원	조 합 장	1	1	-
	상 임 이 사	1	1	-
	이사, 감사	15	13	2
직 원		166	140	26
계		183	155	28

○ 조합원 및 준조합원 현황

구 분	2022년 6월 말 (A)	2021년 말 (B)	증 감 (C=A-B)
조 합 원	5,602 명	4,409 명	1,193 명
준조합원	52,229 명	49,902 명	2,327 명

3. 정관변경 사항

현 행	개 정	비 고
<p>제46조 (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102인으로 ~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선출 구역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내동 2명 2. 성동동 2명 3. 황오동 3명 4. 중앙동3명(노동1명,노서2명) 5. 성건동 6명 6. 사정동 4명 7. 황남동 3명 8. 인교동3명(교동1명,인왕2명) 9. 충효동 5명 10. 서악동 2명 11. 효현동 3명 12. 광명동 4명(광명1동 2명, 고란 2명) 13. 동방동 3명 14. 남산동 2명 15. 도지동 2명 16. 배반동 3명 17. 구황동 2명 18. 보문동 2명 19. 황성동 5명 20. 용강동 3명 21. 동천동 5명 22. 탑 동 2명 23. 덕황동 2명(덕동 1명, 황룡동 1명) 24. 암곡동 2명 25. 천군동 2명 26. 손곡동 2명 27. 북군동 1명 	<p>제46조 (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127인으로~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 선출 구역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내동 2명 2. 성동동 2명 3. 황오동 3명 4. 중앙동3명(노동1명,노서2명) 5. 성건동 6명 6. 사정동 4명 7. 황남동 3명 8. 인교동3명(교동1명,인왕2명) 9. 충효동 5명 10. 서악동 2명 11. 효현동 3명 12. 광명동 4명(광명1동 2명, 고란 2명) 13. 동방동 3명 14. 남산동 2명 15. 도지동 2명 16. 배반동 3명 17. 구황동 2명 18. 보문동 2명 19. 황성동 5명 20. 용강동 3명 21. 동천동 5명 22. 탑 동 2명 23. 덕황동 2명(덕동 1명, 황룡동 1명) 24. 암곡동 2명 25. 천군동 2명 26. 손곡동 2명 27. 북군동 1명 	

현행	개정	비고
<p>28. 배 동 2명</p> <p>29. 배동2리 2명</p> <p>30. 석장동 2명</p> <p>31. 율동1.3리2명(율동1리1명, 율동3리1명)</p> <p>32. 율동2.4리3명(율동2리2명, 율동4리1명)</p> <p>33. 여성대의원의선출구역은 다음각목과같으며,선출구역 안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p> <p>가. 성동동 1명</p> <p>나. 성건동 1명</p> <p>다. 충효동 1명</p> <p>라. 서악동 1명</p> <p>마. 동방동 1명</p> <p>바. 남산동 1명</p> <p>사. 도지동 1명</p> <p>아. 배반동 1명</p> <p>자. 보문동 1명</p> <p>차. 황성동 1명</p> <p>카. 동천동 1명</p> <p>타. 탑 동 1명</p>	<p>28. 배 동 2명</p> <p>29. 배동2리 2명</p> <p>30. 석장동 2명</p> <p>31. 율동1.3리2명(율동1리1명, 율동3리1명)</p> <p>32. 율동2.4리3명(율동2리2명, 율동4리1명)</p> <p>33. 천북면 동산1리 2명</p> <p>34. 동산2리 2명</p> <p>35. 덕산리 1명</p> <p>36. 신당1리 2명</p> <p>37. 신당2리 1명</p> <p>38. 신당3리 1명</p> <p>39. 모아1리 3명</p> <p>40. 모아2리 1명</p> <p>41. 오야리 2명</p> <p>42. 물천1리 1명</p> <p>43. 물천2리 1명</p> <p>44. 갈곡리 2명</p> <p>45. 성지1리 1명</p> <p>46. 성지2리 1명</p> <p>47. 화산1리 1명</p> <p>48. 화산2리 1명</p> <p>49. 화산3리 1명</p> <p>50.여성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선출구역 안의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p> <p>가. 성동동 1명</p> <p>나. 성건동 1명</p> <p>다. 충효동 1명</p> <p>라. 서악동 1명</p> <p>마. 동방동 1명</p> <p>바. 남산동 1명</p> <p>사. 도지동 1명</p> <p>아. 배반동 1명</p> <p>자. 보문동 1명</p> <p>차. 황성동 1명</p> <p>카. 동천동 1명</p> <p>타. 탑 동 1명</p> <p>파. 동산2리 1명</p>	

현행	개정	비고
<p>제51조(임원의 정수)</p> <p>① 3.조합원인 이사 10명</p>	<p>제51조(임원의 정수)</p> <p>① 3.조합원인 이사 12명</p>	
<p>제52조(임원의 직무)</p> <p>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p> <p>1.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2.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3. 제5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4.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제52조 (임원의 직무)</p> <p>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p> <p>1. 제5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2. 삭제</p> <p>3. 제5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4.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 1항 제7호부터 제9조 까지)</p>	
<p>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10.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 이상의 ~</p>	<p>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10.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2,000좌 이상의 ~</p>	
<p>제101조(선거방법)</p> <p>① 이사는 ~ 배분할수 있다. (2012.2.13.2015.08.21.2017.12.26. 개정)</p> <p>②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제101조(선거방법)</p> <p>① 이사는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수는 조합원 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22조(자격제한등)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2.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p>	<p>제122조(자격제한등)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2.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2.4.7. 개정)</p> <p>제1조 (시행일) ①이 정관은 합병등기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p> <p>제3조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6조 제1항 10호는 조합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6조 제1항 12호는 조합이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22조 제2항 제2호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2년간은 적용하지아니한다. ②제122조 제2항 제3호는 합병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간으로 하는 경우는 2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조 (합병에 따른 경과조치) ①합병의결일 이후 합병등기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의원은 합병등기일 이후 2월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②합병참여조합의 대의원은 합병등기일 이후 2월까지 본 조합의 대의원으로 본다.</p>	

Ⅱ.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우리농협은 각종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양질의 영농자재 공급과 교육지원에 전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지역을 선도하는 금융 및 경제의 중심체로서 지역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주요 교육지원사업

- 농업인 안전 보험가입
 - 내 용: 조합원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하여 조합원 1,519명 (6월말 기준)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함(1인당35,230원)
- 영농자재 교환권 교부
 - 일 시: 2022년 6월 2일
 - 내 용: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합원을 위하여 농업실익예산(창립기념일,농업인의날) 조기집행으로 농업경영비 지원
- 조합원 학자금 지원
 - 일 시: 2022년 4월 15일
 - 내 용: 조합원자녀 대학졸업예정자 37명에게 1인 1백만원씩 지원
- 농촌일손돕기지원
 - 일 시: 2022년 5월 11일
 - 내 용: 주부대학회원 180여명 바쁜농가,배,사과 적과 일손돕기
-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인력지원실시
 - 일 자: 2022년 3월 28일~6월 30일
 - 내 용: 경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요청하여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함 (190명 인력지원)

2. 경제(유통)사업

6월말 현재 경제사업량은 40,772백만원으로 계획대비 39,20%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사업부문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사업은 조합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이용이 필요하며, 9,561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대비 63.63%로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조합원들의 전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주농협은 조합원의 필요한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위해 영농자재센터 및 육묘장 사업등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사업과 조합원 실익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판매사업은 관내 농산물 취급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대비 41.63%의 달성율인 12,993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공판장(채소,과일) 운영에 따른 사업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말 사업계획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트사업은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합원 및 지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대비 31.61%의 달성율인 17,710백만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농협 하나로마트는 믿고 찾는 우리지역 생활장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할인 행사를 통하여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농산물직매장(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 상호금융 예수금

상호예수금 잔액은 850,195백만원이며 계획대비 98.84% 달성
상호예수금 평잔은 836,886백만원이며 계획대비 99.04% 달성
전년말 대비 잔액은 100,828백만원 증가하고, 평잔은 111,61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상호금융 대출금

상호대출금 잔액은 708,369백만원이며 계획대비 96.57% 달성
상호대출금 평잔은 698,960백만원이며 계획대비 97.30% 달성
전년말 대비 잔액은 72,759백만원, 평잔은 76,610백만원 증가하였
습니다.

■ 카드사업(e금융)

카드사업의 성장을 위하여 카드가맹점의 꾸준한 유치와 NH카드 및
BC카드 신규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e금융을 통한 각종 서비스혜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종 금융사고예방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사업규모와 수익증대를 위하여 조합원님의 적극 적인 사업 이용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업

보험료는 5,610백만원으로 계획대비 52.3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조합원과 그 가족 및 보험계약자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장기 저축 및 연금보험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 및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업은 농업인보장확대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상품개발로
조합원님의 적극 적인 사업이용 부탁드리며 꾸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2년 6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증 감	성장률	
경제사업	104,020	40,772	39.20	39,171	1,601	4.09	
판 매	31,214	12,993	41.63	11,588	1,405	12.12	
구 매	15,028	9,561	63.63	7,713	1,848	23.97	
마 트	56,024	17,710	31.61	19,101	△1,391	△7.28	
가 공							
기 타	1,754	508	28.96	769	△261	△33.94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	860,166	850,195	98.84	801,228	48,967	6.11
	평잔	844,986	836,886	99.04	799,418	37,468	4.69
상호금융 대출금	잔액	733,545	708,369	96.57	669,070	39,299	5.87
	평잔	718,339	698,960	97.30	660,533	38,427	5.82
보험료	10,719	5,610	52.34	6,051	△441	△7.28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19,356	I. 유동부채	20,761
현금	4,930	외상매입금	977
외상매출금	2,381	단기차입금	10,449
재고, 생물자산	6,544	기타유동부채	9,335
기타유동자산	5,501	II. 금융업예수금	850,195
II. 금융업예치금	175,937	III. 금융업차입금	8,478
III. 금융업대출채권*	698,149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2,585
V. 비유동자산	70,833	장기차입금	1,760
투자자산	20,039	기타비유동부채	825
유형자산	50,757	부채 합계	882,019
무형자산		I. 출자금	37,915
기타비유동자산	36	II. 자본잉여금	13,637
		III. 자본조정	△31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30,735
		자본 합계	82,256
자산 총계	964,275	부채와 자본 총계	964,275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6월말 (A)	'22년 6월말 (B)	증 감 (B-A)
영업수익	36,497	46,152	9,655
영업비용	24,690	30,042	5,352
매출총이익	11,807	16,110	4,303
신용사업	8,420	12,100	3,680
경제사업	3,387	4,010	623
판매비와관리비	7,518	9,128	1,610
영업손익	4,289	6,982	2,693
교육지원사업준비	871	710	△161
영업외손익	279	392	113
법인세차감전손익	3,697	6,664	2,967
법인세비용	-41	6	47
당기순손익	3,738	6,658	2,920